

## 용두산공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6조(고지)와 관련하여 용두산공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통지에 있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본 공시송달은 2022. 12. 28.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022년 12월 14일  
부산시설공단 이사장



1. 건 명: 용두산공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2. 12. 14. ~ 12. 28. (15일간)
3. 처분 당사자 및 처분 내용
  - 당 사 자: 안○영
  - 주 소: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○○(우동)
  - 처분내용: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(취소일자: 2022. 12. 01.)
  - 처분원인: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
  - 근거법령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(사용허가의 취소)제1항제5호
4. 사용료 납부
  - 사용료는 용두산공원 관리사무실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(단위: 원, 원단위 절사)

본 세(사용료)	연체료(가산금)	부가가치세	합 계	납부기한
465,320	62,100	46,530	573,950	2023. 01. 11.

## 5. 유의사항

-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
-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설공단 중앙공원사업소(용두산공원) (☎051-860-782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